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전망

장영욱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yojang@kiep.go.kr, Tel: 044-414-1221)

오태현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이현진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 (hjeanlee@kiep.go.kr, Tel: 044-414-1226)



차 례

1. 배경
2.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6월 '유럽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한 후, 그 후속조치로 2024년 1월 다섯 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 유럽경제안보전략은 EU의 핵심 기술 및 산업경쟁력 제고, 경제안보 위험 식별 및 복원력 있는 공급망 구축, 국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시됨.
 - 후속 이니셔티브는 규정(1개), 권고문(1개), 백서(3개)의 형태로 제시됨.
- ▶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외국인투자 심사규정 개정안] 기존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여, 모든 EU 회원국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회원국별 제도간 조화를 개선하며, 심사 대상 투자 범위를 확대함.
 - [② 수출통제 백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EU 차원 수출통제의 효과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통제 품목 관련 EU의 권한 확대, 정치협약체 신설, 이중용도 규정 평가 조기 시행 등을 제안함.
 - [③ 해외투자 백서] 주요국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제도에 대응하여, EU 회원국에서 이루어지는 해외투자에 관한 모니터링, 위험 식별 및 평가,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
 - [④ 이중용도 기술 R&D 지원 백서] 잠재적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호라이즌 유럽, 국방혁신계획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강화를 모색하며, 이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
 - [⑤ 연구안보 개선에 관한 권고안] 연구혁신(R&I) 관련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EU 내 모든 공공 및 민간 연구 수행 조직과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안보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 유럽경제안보전략의 일환으로 이미 제시되었거나 앞으로 제시될 조치들의 유형과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 또는 활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의견 개진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 심사규정, 수출통제 등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EU 진출 및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한편, 연구지원 강화는 호라이즌 유럽을 통한 국내 연구기관의 EU 공동연구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이번 후속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EU 차원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경제안보 관련 조치를 파악하여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배경

■ EU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는 2023년 6월 ‘유럽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한 후 그 후속조치로 2024년 1월 다섯 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제적 강압, 사이버 공격 등 글로벌 경제·통상 위협 요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EU는 지난해 6월 유럽경제안보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¹⁾
 - 유럽경제안보전략은 △ 촉진(Promoting), △ 보호(Protecting), △ 협력(Partnering)이라는 우선순위 분야(소위 ‘3P’)를 규정하고 EU의 핵심 기술 및 산업경쟁력 제고, 경제안보 위협 식별 및 복원력 있는 공급망 구축,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모색함.
 - 2023년 10월 EU 집행위는 발전 잠재력, 군사용도 전용 가능성, 인권침해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4대 핵심 기술(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생명공학)을 선정하였고, 연말까지 해당 기술의 경제안보 위협 요소를 평가할 것을 권고하였음.²⁾
- 2024년 1월 EU 집행위는 유럽경제안보전략의 후속조치로 ‘촉진’ 및 ‘보호’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함.³⁾
 - EU가 제안한 이니셔티브는 현재 진행 중인 위협평가를 기반으로 가장 시급한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 이루어졌음.

■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조치는 무역 및 투자 관련 이니셔티브 3개와 연구 관련 이니셔티브 2개로 구성되며, 규정(1개), 권고문(1개), 백서(3개)의 형태로 제시됨(그림 1 참고).⁴⁾

- 미국, 중국 등이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는 수출통제 및 투자 규제 정책에 대응하여, EU 역시 무역 및 투자에 관해 회원국간 통일, 조율된 규제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번 후속조치의 무역 및 투자 관련 이니셔티브에는 외국인투자 심사규정 개정안, 수출통제에 관한 백서, 아웃바운드 해외투자에 관한 백서가 포함됨.
- 또한 이중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 개발 영역에서 주요국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EU 역시 연구개발 지원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술유출 방지 등 연구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 연구 관련 이니셔티브에는 이중용도 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백서, 연구안보 개선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이 포함됨.

1) EU 경제안보전략의 주요 내용은 European Commission(2023), “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 JOIN(2023) 20 final 및 오테현(2023. 6.), 「EU 경제안보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3-24 참고.

2) C(2023) 6689 final.(2023. 10. 3.).

3) European Commission(2024. 1. 24.), “Advancing European economic security: an introduction to five new initiatives,” COM(2024) 22 final.

4) △ 규정(regulation): EU 법체계상 가장 상위법으로 EU 집행위 제안,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 승인을 통해 채택될 경우 27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함. △ 권고문(recommendation):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EU법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성격을 지님. △ 백서(white paper): 구체적인 법 제안 전 회원국, 이해관계자,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안을 담은 문건임.

그림 1.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 도식



자료: EC COM(2024) 22 Final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

가. 투자 및 통상 관련 이니셔티브

1) 외국인투자 심사규정 개정안⁵⁾

■ [배경] 2020년 10월 EU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 심사규정(Regul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Screening)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의 제도 미도입, 기존 규정 적용의 한계, 회원국별 상이한 절차 등의 문제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됨.

- 도입 논의 당시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한 회원국은 14개국이었으며, 2023년 6월 기준 22개국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5개국(크로아티아, 불가리아, 그리스, 키프로스, 아일랜드)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5) European Commission(2024),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the screening of foreign investments in the Union and repealing/Regulation (EU) 2019/4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M(2024) 23 final.

- 외국인투자 심사규정을 통해 미국, 영국, 스위스, 중국, 싱가포르, UAE 등에 의한 투자 약 1,200건이 사전심사를 받았으며, EU 집행위는 이 중 약 3%에 대해 우려 의견을 전달함.
- 기존 규정은 외국인투자일지라도 EU 역내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할 경우 적용되지 않았으며, 회원국간 심사 절차가 상이하다는 한계가 있음.

■ [주요 내용] 이번 외국인투자 심사규정 개정안은 모든 EU 회원국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회원국별 제도간 조화를 개선하며, 심사 대상 투자 범위를 더 넓게 적용함.

-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도입 의무화] 모든 EU 회원국이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심사에서 주요 내용이 회원국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적용 범위] 외국인투자자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EU 자회사의 투자에도 동 규정을 적용함.
- [심사 대상] 이니셔티브 부록 1과 부록 2에서 명시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필수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함.
 - 심사 대상에는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범유럽 운송·에너지·통신 네트워크, 유라톰(EURATOM) 연구 등 EU 관심 프로젝트(부록 1)와 이중용도 품목,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생명공학 등 경제안보 핵심 기술(부록 2)이 포함됨.
- [회원국 통보 의무 강화] 투자 대상 회원국은 심사 대상이 되는 자국 내 투자에 대해 (i) 심층조사를 개시하거나, (ii) 예외적으로 심층조사 없이 제한조치를 시행한 경우 EU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에 이를 통보해야 함.
- [회원국 결정에 대한 관여 확대] 기존 규정에서는 최종 결정 권한이 투자 대상 회원국에 주어졌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최종 결정 이전에 다른 회원국 및 EU 집행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함.
- [직권에 따른 외국인투자 심사 개시] EU 집행위 및 다른 회원국은 통보되지 않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15개월에 걸쳐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 고려 요소 의무 적용] 외국인투자자가 제3국의 통제를 받는지 여부, 외국인투자자 및 자회사가 EU의 공공질서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개입한 적이 있는지 여부, 외국인투자자 및 자회사가 노동 관련 불법조치나 범죄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 여부, 제3국의 군사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발표 및 적용] 발효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 후, 발효일로부터 15개월 후 적용됨.

■ [기대효과] EU 집행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EU 회원국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EU 차원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함.

- 회원국별로 다른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특정하게 되며, 비EU 회원국 개인 및 단체의 통제를 받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심사규정이 확대 적용됨.
 - 외국인투자 평가 시 핵심 인프라, 핵심 기술, 전략원자재 공급, 민감정보 보호, 언론의 자유와 다양화 관점 등이 공통으로 적용됨.

2) 수출통제에 관한 백서⁶⁾

- [배경] 기존 이중용도 품목⁷⁾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로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질서하에서 발생하는 경제안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며 새로운 수출통제 제도의 필요성이 부상함.
- 만장일치를 요하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가 러시아나 중국 등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주요국의 일방적인 수출통제 조치 및 EU 회원국의 독자적인 수출통제 조치 등이 EU 기업과 글로벌 가치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주요국의 일방적인 수출통제 조치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2022년 10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통제(2023년 5월), 중국의 갈륨 및 게르마늄, 무인항공, 흑연 및 흑연을 포함한 제품의 수출통제(2024년 7~9월) 등이 있음.
 - EU 회원국 사례로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2023년 6월), 스페인의 양자컴퓨팅 및 적층 제조 수출통제(2023년 5월), 리투아니아의 항공기 관련 수출금지(2023년 5월) 등이 있음.
- 2021년 채택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관련 EU의 규정⁸⁾은 △ 신규 통제 품목 및 신규 규제 도입의 경직성, △ 역외국의 일방적인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 미흡, △ 단일화된 EU의 접근 방식 부재, △ 국가별 통제 목록 채택 시 회원국간 조율 부족 등의 문제점을 노출함.
 - 특히 회원국별로 상이한 독자적인 수출통제 조치는 EU 차원의 단일화된 수출통제 시행에 분열을 야기할 수 있음.
- [주요 내용] EU 집행위는 이번 수출통제 백서를 통해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EU 차원 수출통제의 효과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EU 차원의 통일된 수출통제]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일부 국가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 품목을 EU 차원의 수출통제 품목(기존 EU 이중용도 기술규정 부록 1)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
 - [EU 정치협약체 신설] 수출통제 관련 EU 차원의 목소리를 통일하고 회원국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정치협약체를 신설함.
 - [EU 회원국간 수출통제 협력] EU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EU 집행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 공지하도록 하는 EU 집행위 권고안을 2024년 여름에 제안할 예정임.
 - [EU 이중용도 규정 평가 시기 조정] 당초 2026~28년으로 예정된 EU 이중용도 규정 평가를 2025년으로 앞당기고, 2024년에 종합평가를 실시할 방침임.

6) European Commission(2024), "White Paper on Export Controls," COM(2024) 25 final.

7) 이중용도 품목이란 민간용으로 개발된 기술, 상품 및 소프트웨어지만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하며, 첨단반도체, AI, 레이저 등 신기술이 포함됨.

8) European Union(2021), "Regulation setting up a Union regime for the control of exports, brokering, technical assistance, transit and transfer of dual-use item."

3) 해외투자에 관한 백서⁹⁾

- [배경] 주요국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통제를 도입 또는 검토하는 상황에서 EU 역시 경제안보에 위협이 되는 해외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함.
 - 일본, 중국이 이미 해외투자 통제제도를 도입했고 미국 등이 제도 구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EU 역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투자의 잠재적 위협 요인을 관리하기로 함.
 - EU 차원의 단일화된 해외투자 위험 평가 및 규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부상함.
 - 특히 해외투자에 따른 잠재적인 우려에 대한 식별, EU 해외투자의 범위 및 속성에 대한 정보 구축, 해외투자에 따른 안보위험 평가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 내용] 이번 해외투자 백서를 통해 EU 회원국에서 이루어지는 해외투자에 관한 모니터링, 위험 식별 및 평가, 규제방안 마련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적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
 - 2023년 7월에 출범한 해외투자 관련 전문가 그룹의 사전 작업을 바탕으로 향후 해외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할 예정임.
 - 전문가 그룹은 2019년 1월 이후 이루어진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민감 기술 분야 해외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방안 제시
 - 모니터링 대상의 지리적 범위는 특정 국가로 한정되지 않으나, UN 헌장 위반, 분쟁, 인권침해 등의 기준을 통한 사전 위험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려 국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가능
 - EU의 공동안보에 위협을 주는 해외투자를 식별한 후 이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할 예정임.
 - 식별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하고 특정된 조치(proportionate and targeted responses)' 마련
 - [향후 추진 계획] EU 집행위는 2024년 상반기 중 공개 의견수렴 절차(public consultation)를 진행한 후 2024년 여름 전에 권고안을 마련하고, 2025년 내 관련 법안 제안을 계획하고 있음.
 - 2024년 2~4월 중 EU 집행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 개시
 - 2024년 여름까지 EU 차원의 권고안 마련
 - 2025년 여름까지 EU 해외투자에 대한 위험 평가 시행, 2025년 가을까지 해외투자 통제 관련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법안 제출

9)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on Outbound Investments," COM(2024) 24 final.

나. 연구개발 관련 이니셔티브

1) 잠재적 이중용도 기술의 R&D 지원 강화에 관한 백서¹⁰⁾

■ [배경] 이중용도 잠재력이 있는 기술과 관련하여 EU 차원의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자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

- 이중용도 잠재력을 지닌 기술은 EU의 경제안보 및 전략적 자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동 분야에서 EU의 경쟁우위를 유지·강화하고자 함.
 - 현행 호라이즌 유럽은 민간 부문 연구 지원에 한정, 유럽방위기금(EDF)은 국방 부문 연구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고, 민간과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 상호교류에 제약이 있음.
- 이중용도 잠재력을 지닌 기술에 대한 R&D는 민간 및 국방 부문의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어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유럽 산업 및 경제 전반에 기여할 수 있음.

■ [주요 내용] 이중용도 기술 R&D 지원에 관한 백서는 공공기관,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와의 포괄적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세 가지의 개방형 선택지를 제시했고, 2024년 4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¹¹⁾

- [선택지 1] 현행 체제 기반에서의 추가 진행
 - EU의 다년간 재정 프레임워크하에서 진행하되 민간과 국방 부문에서의 시너지 발휘 및 상호교류가 이뤄지도록 체계적으로 발전시킴.
 - 유럽혁신위원회(EIC) 전환계획, EU 국방혁신계획(EUDIS), InvestEU,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EU 집행위, 유럽투자은행(EIB), 유럽투자펀드(European Investment Fund)의 '이중용도 잠재력이 있는 기술'에 대한 공통 정의를 수립하고 공동투자를 진행함.
- [선택지 2] 호라이즌 유럽 후속 프로그램의 특정 분야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독점적 중점(exclusive focus) 경향 제거
 - 전략적으로 부각되는 기술 관련 우수 제안은 프로그램 지원 분야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않도록 함.
 - 호라이즌 유럽 후속 프로그램은 EDF 후속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관련 산업 내 R&D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민간 및 방위산업 부문의 상호교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선택지 3] 이중용도 잠재력을 지닌 기술 R&D에 초점을 맞춘 특화 도구(instrument) 형성
 - △ 자체적 예산과 제도를 보유하고 이중용도 잠재력을 지닌 기술 연구에 특화된 도구 도입, △ 특정 메커니즘·구조 혹은 공공조달 또는 조달 지원도구를 통한 이중용도 잠재력을 지닌 기술의 EU 시장 진출 지원 강화, △ '이중용도 목적(dual-use by design)'의 플래그십 프로젝트 계획 등을 들 수 있음.
 - '선택지 3'은 이중용도 기술 R&D 자체에 대한 가시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으나, 엄격한 자원배분, 이

10) European Commission(2024), "White paper on options for enhancing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volving technologies with dual-use potential," COM(2024) 27 final.

11) '선택지 2'와 '선택지 3'은 상호배타적임.

중용도 R&D/민간전용 R&D/EDF 후속 국방전용 활동 간의 우선순위 결정, 이중용도 목적의 연구가 민간·국방 부문 최종재의 시장 진출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R&D 지원 환경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음.

2) 연구안보 개선에 관한 백서¹²⁾

■ [배경] 핵심 및 이중용도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럽 연구혁신(R&I: Research & Innovation) 분야에서 국제협력력을 통한 개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술유출 등 안보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개선안을 제시함.

- ‘연구안보’는 △ EU 및 회원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지식(critical knowledge), 노하우(know-how) 및 기술의 바람직하지 않은 이전(제3국으로의 군사 목적 이전 등), △ 연구에 미치는 악의적 영향, △ 윤리 혹은 무결성(integrity) 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의미함.¹³⁾
- 경제 및 군사 안보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연구의 개방성 및 국제교류는 기술유출과 연구결과 오남용이라는 부정적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EU 차원의 관리가 필요함.

■ [주요 내용] EU 집행위는 R&I 관련 ‘가능한 한 개방적이고 필요한 만큼 폐쇄적(as open as possible, as closed as necessary)’이라는 원칙하에 EU 내 모든 공공 및 민간 연구 수행 조직과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안보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연구 보호조치의 국제화를 위해 △ 학문의 자유, △ 부문별 자체 거버넌스, △ 위협기반 및 비례성에 대한 정책, △ 초국가적인 접근, △ 모든 형태의 차별 및 오명 회피의 원칙을 제시함.
- [연구자금 지원 기관] △ 자금 신청 절차에서 위험평가(risk appraisal)를 포함, △수혜자가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평가하도록 권장, △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수혜자들이 위험 완화조치에 합의하도록 독려하고 유망 역외 파트너와의 계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연구기관] △ 국제협력력을 위한 내부 위험 평가 및 실사 절차 도입, △ 조직 내 연구안보 책임 부여, 인지 제고 활동 및 훈련 개발, △ 신규 연구직 직원 채용 시 연구보안 고려, △ 민감 지식 및 연구시설 보호, 구획화(compartmentalism)나 강력한 사이버보안 조치와 같은 물리적 및 가상적인 보호조치 도입을 추진함.
- [EU의 역할] △유럽 연구안보 전문센터를 설립하여 증거 기반의 정책결정 촉진 및 실무 조직 형성, △ 연구기관의 향후 파트너 실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 개발 및 적용 가능한 EU 법률해석 제공, △ 권고의 수용, 유럽 내 동료 학습 및 접근 일관성 추진, 격년 단위의 추진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함.

12) 동 문건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사회 권고의 형식으로 제안됨. European Commission(2024), “COUNCIL RECOMMENDATION on enhancing research security,” COM(2024) 26 final.

13) Research Security는 좁은 의미의 ‘연구보안’을 포함. 핵심 지식 연구에 관련된 전반적인 안보 위협을 다루기 때문에 ‘연구 안보’로 번역하였음.

3. 평가 및 전망

가. 평가

- [주요 반응]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 패키지는 외부의 압력에 맞서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첫걸음으로 평가되나, 구속력이 담보된 구체적인 행동계획 발표로 이어지지 않아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도 상존함.
 - EU 및 독일,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동 패키지의 방향성을 큰 틀에서 지지하고 있음.
 - EU 집행위 경제재정총국(DG ECFIN)은 이번 조치가 급변하는 국제 경제질서하에서 EU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자주의 질서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함.¹⁴⁾
 - 독일 연방부총리 겸 연방경제기후부 장관인 Robert Habeck은 ‘투자과 대외무역에 대한 경계심을 제고’하기 위해 ‘주권과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배터리, 재생에너지, 반도체, 녹색 철강, 수소 등의 해결 및 생산 촉진을 위한 법적인 틀의 필요성’을 들어 동 경제안보 패키지의 발표를 환영함.¹⁵⁾
 - 또한 동 패키지에 프랑스의 보호주의적 성향이 반영되어 프랑스 정부의 지지를 받음.¹⁶⁾
 - 이번 패키지에는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다수 언론은 중국으로부터의 위험 완화(de-risking)가 동 패키지의 주요 목적이라고 평가함.
 - Politico는 동 패키지의 발표가 미중 간 경쟁 국면에서 “EU 또한 (미국의 편에서) 싸움에 참여할 준비”를 의미한다고 보았음.¹⁷⁾
 - 또한 Wall Street Journal의 논설에서는 “중국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부재”했으나 “유럽이 드디어 중국 문제를 인지했다”라고 해석함.¹⁸⁾
 - 이 외에도 Euractiv, LesEchos, Le Monde 등에서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조치가 중국과 유럽 간 경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되었다고 평가함.¹⁹⁾
 - 한편 동 패키지의 방향성 및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상존함.
 - 네덜란드의 Clingendael은 “EU가 안보와 위협에 초점을 맞춘 방어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술 리더십 확보 및 파트너십 촉진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²⁰⁾
 - 독일기계산업협회(VDMA)는 “EU 안보는 민감 기술에 대한 수출규제로 이미 보호”되고 있어 “유럽의

14) 제11차 한-EU 거시경제대화(2024. 1. 31.).

15) BMWK(2023. 1. 24.), “Bundesminister Habeck begrüßt neues Paket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zur Wirtschaftssicherheit,” 언론보도자료(검색일: 2024. 2. 1.).

16) Euronews(2024. 1. 24.), “EU set to tighten scrutiny over foreign investments in key sectors with new economic security plan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2. 1.).

17) Politico(2024. 1. 19.), “EU warms up for fight over economic security,”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2. 1.).

18) Wall Street Journal(2024. 1. 25.), “Welcome, Warily, the EU Getting Serious on China,”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2. 1.).

19) Euractiv(2024. 1. 25.), “EU reveals new economic security plan to resist ‘fierce’ Chinese tech competition,”; LesEchos “Securite economique: Bruxelles veut mobiliser les Vingt-Sept”; Le Monde “La Commission europeenne veut renforcer le controle des investissements etrangers au sein de l’UE”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2. 1.).

20) Clingendael(2023. 6. 26.), “The European Union is unwisely defensive in its economic security,”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2. 1.).

역외지역 투자가 역내 공공안보 및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고 보아, 동 패키지가 “(역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성공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함.²¹⁾

- ECFR의 Alicja Bachulska 연구위원은 동 패키지가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지만 “모호한 개선 사항”에 대해 비판하면서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잠재적 영향에 대해 지적함.²²⁾
- 또한 다수 언론에서 동 패키지 상당수가 구속력 없는 권고안에 불과하고, 투자 스크리닝 등 민감 이슈에 대해서는 EU 역내에서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²³⁾

■ [종합 평가] 경제안보 주요 분야 위험 식별 및 회원국간 의견 조율 절차를 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아직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외에는 구속력 있는 규정의 형태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함.

- 민감 품목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 수출,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요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평가 절차를 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최근의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EU 제도 중 미흡한 분야를 일별하였고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관련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다만 다섯 개 이니셔티브 중 구속력 있는 조항을 포함한 규정은 하나에 불과하며, 다른 이니셔티브는 구속력이 없는 이사회 권고안이나 의견수렴 개시를 위한 백서 형태로 제시되어 아직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 이른 단계임.
 - 한-EU 거시경제대화에 참석한 EU 측 인사는 회원국간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현재 제시된 주요 분야 정책이 향후 어떻게 구현되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나. 전망 및 시사점

■ [전망] 이번에 제시된 후속조치는 각 이니셔티브에 제시된 일정표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이나, 2024년에 유럽의회 선거, 새로운 EU 집행위 구성 등의 이슈가 있어 얼마나 진전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함.

- 외국인투자 심사규정 개정안과 연구안보 관련 권고안은 일반적인 EU의 법적 절차를 거쳐 채택될 예정이며,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양쪽의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채택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예컨대 기존 외국인투자 심사규정의 경우, 2017년 9월에 처음 제안된 후 2019년 3월에 채택되었고 2020년 10월에 발효됨.
 - 이번 개정안 역시 채택까지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채택 후에도 15개월이 지나서 발효되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음.

21) VDMA(2023. 1. 24.), “BEU-Regeln sollten Investitionen ankurbeln, nicht behindern!,” 언론보도자료(검색일: 2024. 2. 1.).

22) Euractiv(2024. 1. 25.), “EU reveals new economic security plan to resist ‘fierce’ Chinese tech competition,”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2. 1.).

23) *Ibid.*: Wall Street Journal(2024. 1. 25.), “Welcome, Warily, the EU Getting Serious on China,”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2. 1.).

- 이번에 백서 형태로 제시된 해외투자, 수출통제, 이중용도 기술 R&D 지원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4년 여름 중 권고안, 법안 등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투자 권고안 관련 의견수렴은 2024년 1월 25일~4월 30일까지, 수출통제 및 이중용도 기술 R&D 관련 의견수렴은 2024년 2월 2일에서 4월 30일까지 이루어지며,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정책 대안으로 발전될 예정이다.
 - EU 집행위는 이번 유럽의회 회기가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나, 해외투자 규제, 이중용도 기술 지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회원국간 이견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함.
 - 2024년 6월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11월 새로운 EU 집행위가 구성되기 때문에 논의의 진전이 어려울 수 있음.
 - 법안 및 권고안이 올해 내에 제시된다 하더라도 실제 채택 및 시행은 2025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사시점] 이번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유럽경제안보전략의 일환으로 이미 제시되었거나 앞으로 제시될 조치들의 유형과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 또는 활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의견 개진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후속조치 영향 파악] 외국인직접투자 심사규정, 수출통제 등은 우리나라 기업의 EU 진출 및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속성 및 채택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함.
 - 기존 외국인직접투자 심사규정 시행 이후 심사 대상이 되었던 기업은 대부분 미국(인수 32.2%, 그린필드 투자 46.5%, 2022년 기준)과 영국(인수 25.1%, 그린필드 투자 19.0%)으로 우리나라의 비중은 매우 작았으나, 향후 규정 적용 범위 확대 시 우리 배터리, 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EU 진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²⁴⁾
 - EU 차원의 이중용도 품목 목록 작성 추이에 따라 국내 수입기업의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EU에서 이중용도 기술 R&D 지원이 강화될 경우, 한국 연구자들이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제연구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음.
 - 현재 한국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입 확정 전에도 유럽 지역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²⁵⁾
 - 국내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식 협의 채널 및 EU의 의견수렴 통로를 활용하여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 한-EU 공급망산업정책 대화(2023년 12월 시행), 한-EU 거시경제대화(2024년 1월 시행) 등 정례화된 공식 대화체와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등 외교 채널, 민간기관간 트랙 2.0 대화체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하여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외국인투자 심사규정 개정안, 수출통제 백서, 해외투자 백서, R&D 지원 백서 등에 대한 의견수렴

24) European Commission(2023. 10. 19.), "Third Annual Report on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Union."

25) 호라이즌 유럽 웹사이트,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strategy/strategy-2020-2024/europe-world/international-cooperation/bilateral-cooperation-science-and-technology-agreements-non-eu-countries/korea_en(검색일: 2024. 2. 1.).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의견수렴 링크는 각주 참고).²⁶⁾

- [관련 정책동향 파악] 이번 후속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EU 차원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인 경제안보 관련 조치를 파악하여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EU는 단일시장긴급조치,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공급망실사지침 등 역내 산업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안보조치를 추진하고 있음(표 1 참고).
 - 이러한 조치들이 글로벌 공급망 및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적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KIEP

표 1. EU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 법 추진 현황

정책	주요 내용	시행/채택 일정
단일시장긴급조치	팬데믹, 전쟁 등 위기 발생 시 필수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망 유지를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재고 비축 의무 부과, 기업에 재고 및 생산량에 대한 정보 요청, 특정 주문 우선 생산 요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	2022년 9월 제안, 현재 승인 절차 진행 중
기후중립산업법	재생에너지, 배터리 기술 등 8개 '기후중립 전략기술'을 정하고, 동 기술의 EU 역내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연간 수요의 40%까지 증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규제 간소화, 인력 및 연구개발 지원, 정부조달 친환경기준 강화 등의 지원방안 제시	2023년 2월 제안, 현재 승인 절차 진행 중
핵심원자재법	17종의 전략원자재에 대한 역내 채굴(10%), 가공(40%), 재활용(25%) 비중 목표를 설정하고, 단일 국가에 대한 수입비중을 65%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이를 위해 허가 절차 간소화, 자원 접근성 개선, 공급망 관리, 국제협력 등의 지원방안 제시	2023년 12월 삼자합의 타결, 2024년 내 채택 예상
공급망실사지침	EU 역내 대기업 및 역내에서 활동하는 일정 규모 이상 비(非)EU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위반 시 벌금 등의 행정제재와 함께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등 부과 가능	2023년 12월 삼자합의 타결, 2024년 내 채택 예상
역외보조금 규정	EU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자국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	2023년 10월부터 시행 중

자료: EU 공식문건을 토대로 저자 정리.

26) - 외국인 투자 관련(~2024년 4월 2일):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3739-Screening-of-foreign-direct-investments-FDI-evaluation-and-revision-of-the-EU-framework_en.
 - 해외투자 관련(~2024년 4월 30일):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4143-Recommendation-to-monitor-outbound-investments-for-further-risk-assessment_en.
 - 이중용도 기술 R&D 지원 관련(~2024년 4월 30일):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4060-RD-on-dual-use-technologies-options-for-support_en.
 - 수출통제 관련(~2024년 4월 30일):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4060-RD-on-dual-use-technologies-options-for-support_en.